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문서번호 SBP-20230403-01

2023. 04. 03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3. 04. 03.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사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 내용1부.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1부.
3. 이사회 의사록 1부.
4. 이력서 1부
5. 임원적격여부 확인서 1부
6.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7. 결격사유조회회보서 1부
8.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끝.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작 성 자 : 유옥근(상무)

전화번호 : 02-3475-3272

(붙임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내용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성명 (한자)	직위	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겸직 직위 및 업무	주요경 력 ¹⁾	자격요 건 확인결 과
김창권 (金昌權)	이사	여	580910	2023. 04.03	(3년) 2026. 04.02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이사	롯데카드 (2017.02~ 2023.03)	결격사 유없음

주 1)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

2. 준법감시인(겸 위험관리책임자) 사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사임일	사임사유 ¹⁾	비고 ²⁾
박형인 (朴炯仁)	620228	2019.10.31	2023.04.02	일신상의 형편에 따른 사임	

주 1) 사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결의서, 사직서 사본 등) 첨부

2) 향후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정 및 절차 등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 고
대표이사 (상임, 등기)	정원용 (鄭元裕)	641025	2020.12.08	3년 2023.12.07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당사항 없음	
이사 (비상임, 등기)	현석호 (玄皙皓)	731022	2020.12.08	3년 2023.12.07	화승T&C이사, (주)화승인더스트 리 대표이사	(주)화승인더스트리 (모회사), 제조업, 대표이사, 그 외 모회사 계열회사 비상근이사 겸임	
이사 (비상임, 등기)	이찬호 (李贊浩)	720222	2020.06.16. (2017.06.15., 2회차)	3년 2023.06.15	제일기획 경영지원실, 삼일회계법인, (주)화승인더스트 리 경영관리담당	(주)화승인더스트리 (모회사), 제조업, 이사	
이사 (상임, 등기)	유옥근 (兪玉根)	810715	2020.06.16 (2017.08.21., 2회차)	3년 2023.06.15	삼일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 (비상임, 등기)	어봉환 (漁逢桓)	760911	2022.04.08	3년 2025.04.07	CJ제일제당(주) 재무전략실, CJ(주) 기획실, (주)LX 판토스 전략기획실	(주)화승인더스트리 (모회사), 제조업 兼 (주)화승엔터프라이즈, 제조업, 재무팀 이사	
이사 (상임, 미등기)	김창권 (金昌權)	580910	2023.04.03.	3년 2026.04.02	롯데카드(2017.03~ 2023.03)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업무 집행책임자)	이호성 (李昊星)	710920	2023.01.16	해당없사항 없음	(주)에스비파트너 스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업무 집행책임자)	진재훈 (陣載勳)	820613	2023.01.16	해당없사항 없음	뿌리깊은나무들(주) (KONEX)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업무 집행책임자)	백운선 (白雲先)	850719	2023.01.16	해당없사항 없음	도미누스인베스트 먼트	해당사항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성명 (한자)	김창권(金昌權)	직위	이사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해당사항 없음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각 목(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사항 없음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해당사항 없음	
<u>종합 의견</u> 심사항목에 대한 결격사항 없음			
2023년 04월 03일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 준법감시인 김 창 권 (인)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 대표 이사 정 원 용 (인)			

*제2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확인)
3.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 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성 명 (한 자)	김창권(金昌權)	직 위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해당사항 없음	
2.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사항 없음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해당사항 없음	
<u>총 합 의 견</u> 심사항목에 대한 결격사항 없음			
2023년 04월 03일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 위험관리책임자 김 창 권 (인)		(인)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 대 표 이 사 정 원 용 (인)		(인)	

*제28조 제3항 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확인)
3.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